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43

발의연월일: 2023. 3. 15.

발 의 자:정태호·이학영·김병욱

김주영 • 이장섭 • 임호선

박성준 · 김남국 · 이원욱

설 훈 • 윤영덕 • 박범계

조오섭 · 전해철 · 남인순

홍성국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 감면 제도의 하나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당 시행령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하고 있어 수소 및 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천 기술이 제외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최근 첨단산업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기업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친환경 전기차로의 유연한 산업전환을 위해 부품,

생산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차 및 수소 분야 기술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5(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25)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첨단산업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술(이하"를 "기술(반도체, 이 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차 및 수소 분야의 기술을 포함하며, 이하"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을 "100분의 15(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2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통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3 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u>,</u>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	
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	
나만을 적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국가안	2
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술</u>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급하여 계산한 금액

가.·나. (생 략) 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스플레이, 전기차 및 수소 분
야의 기술을 포함하며, 이하-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나. (생 략)

② ~ ⑤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
1) (현행과 같음)
2)
<u>100</u> 분의 <u>15</u>
(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u>25)</u>
<u> </u>
1] /처체코 가야)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